

# 휴일 대체 근로 동의서

2024년 근무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여가시간 증대 및 병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지정된 노조창립일 휴무일에 정상근로하고 근로자가 정한 근무일에 휴일을 대체하여 사용함을 합의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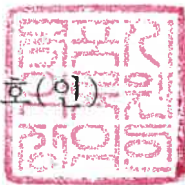
- 아 래 -

1. 적용 대상 : 전 직원
  2. 대체근무일
    - 노조창립일 : 2024년 02월 27일(화)
  3. 대체휴일 사용기한
    - 2024년 12월 31일 까지
- ※ 대체근무 및 대체휴일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은 없음.

2024년 2월 7일

(사용자)

목포시의료원장 최 형 호(인)



(근로자 대표)

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
광주전남지역본부 목포시의료원  
노동조합지부장 송 창 성(인)

